

# 환경보전협회 급수장치 및 저수조 위생관리 법정교육 실시

<편집부>

수도법 제21조 5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 및 저수조 위생관리 교육이 '99년부터 2000년까지 환경보전협회에서 이루어진다. 지난 '93년부터 '98년까지 건축물관리자 및 저수조 청소업자에 대한 급수장치 및 저수조 위생관리 법정교육은 한국수도협회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위탁대상 교육기관이 복수로 지정(본협회의 3개기관-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수도협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본협회에서 동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본 법정교육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양질의 수도물 공급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자 및 저수조 청소업자와 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급수

장치 및 저수조 관리방법 등의 교육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유지관리와 위생관리 그리고 국민건강생활의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건축물관리자과정과 저수조 청소업자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건축물관리자과정은 1일 5시간, 저수조 청소업자과정은 1일 6시간으로 편성된다. 교육일정은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업종별 비수기에 실시하며, 서울본부 및 11개 시·도지회에서 지역별, 과정별 분산교육을 실시한다. 교과목은 관련법규해설 및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무과목 위주로 편성하고, 교육 제1차 불참자는 1회에 한하여 보충교육기회를 부여한다. <표-1>, <표-2> 참조

<표 - 1>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

과 정	교육기간	교육인원	교 육 대 상	교 육 내 용
계		14,056명		
건축물 관리자 과정	1 일 (5시간)	10,853명	○수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공중의생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급수장치시설 및 저수조의 관리 및 위생적인 물관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 지식 및 기술실무 교육
저수조 청소업자 과정	1 일 (6시간)	3,203명	○저수조 청소업자 및 종사자	○저수조 청소업자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저수조의 청소, 소독 작업 등 위생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 지식 및 현장 위주의 기술 실무 교육

〈표 - 2〉 교과목 선정 및 요목

교육과정	교과목	시간	요 목	비 고
건축물 관리자 과 정	법규해설 및 행정실무	1	- 수도법 및 위생등 관련법규 해설 - 법관련 행정실무	○급수장치 시설의 관리 및 위생적인 물관리에 중점
	급수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 급수장치 개론 - 저수조의 설치(설계)기준, 구조물의 재질, 도장 - 시설점검 및 개·보수 - 비상급수시설의 운전요령 - 급수장치 등의 유지관리요령 등	
	저수조 위생관리 및 운영	2	- 적절한 수돗물 관리 -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방법 - 저수조 등의 청소 및 소독 - 위생점검 및 사후관리 - 수질기준 및 검사·환경개선 등	
청소업자 과 정	법규해설 및 행정실무	1	- 수도법 및 위생등 관련법규 해설 - 법관련 행정실무	○저수조의 위생적 청소의 중요성과 청소 도구의 사후 관리 등 현장실무 위주에 중점
	저수조의 위생관리 및 사후관리	2	-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 수질환 경 개선방안 - 저수조 위생 점검 기준 -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	
	저수조의 청소 및 소독, 장비 관리	2	- 저수조의 청소 및 소독작업 등의 기술 방법 - 위생적 청소 도구관리	
	청소 및 소독실무	1	- 현장경험자의 사례발표 (청소방법 등)	

'99년도 법정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98년도까  
지의 교육미필자를 대상으로 각지회별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다만 경기북부지역인 가평, 고양,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  
천의 경우는 편의상 환경보전협회 서울 본회에서  
실시한다. 또한 2000년도 이후에는 수시교육으로  
전환되어 인·허가 건축물 관리자, 신규청소업 신  
고자 및 신규채용 종업원, 관계법령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 문의는 본책자 64page 각 시·도지회 전화번호  
참조